**통계청의 소득 조사의 검토**

통계청 국감 자료(2018.10.15)

작성자: 김낙년(동국대 경제학과)

1. **통계청의 소득조사**
* 가계동향조사 (약 9,000개의 샘플 가구가 매월 가계부를 작성)
* 경제활동인구의 부가조사 (3월 또는 8월에 지난 3개월 간 평균 임금을 조사, 약 6만명의 경활 조사 대상자 중 근로소득에 한정하여 조사)
* 가계금융복지조사 (약 20,000 가구를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조사, 조사표에 의한 면접 방식)
1. **소득조사의 어려움**
* 근로소득의 경우 지난 달 월급이 얼마였냐고 물으면 응답이 가능. 그렇지만 이 경우도 후술하듯이 실제로는 과소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 금융소득의 경우는 지난 달 금융소득을 물으면 답하기 어렵다. 본인 자신도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응답하기 어렵고, 만약 응답하지 못하면 0으로 처리되었다.
* 사업소득의 경우는 총수입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해서 구하는 것이어서 지난 달 사업소득이 얼마였냐고 물으면 제대로 답을 하기 어렵다.
*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2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경우)은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득이 얼마인지에 대해 좀더 정확한 인식을 하게 된다.
* 결국 소득조사를 가계부 방식으로 하든 면접 조사 방식으로 하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1. **소득 파악 실태(2016년)의 비교 검토**
* 근로소득
* 먼저 통계청의 각 조사가 비교적 소득 파악이 용이하다고 생각되는 근로소득을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자. 이 때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일용근로소득)의 소득구간별 통계를 비교 기준으로 하였다. 샘플 조사인 통계청 조사와는 달리, 소득세 자료는 과세되었거나 면세 대상이 된 실재하는 소득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실태를 더 잘 반영한다.
* 아래 <표 1>와 <그림 1>이 그 결과이다. 그리고 <그림 2>는 소득세 자료의 소득 구간별 인원수를 기준(=1)으로 했을 때 통계청의 각 조사가 그보다 얼마나 과소 또는 과대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표 1> 통계청 조사의 소득구간별 근로자 분포: 소득세 자료와의 비교(2016년, 단위: 명)



주: 1) 소득구간의 단위는 백만 원이다.

2) 각 조사는 종사상 지위가 근로자인 자로 한정하였다.

3) 가계동향조사에서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복수인 경우 개인별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 경우는 해당 근로소득을 근로자수로 나누어 배분하였다.

4) 경제활동인구조사는 8월 부가조사를 이용하였고, 연소득은 월 평균 임금\*12개월로 구했다.

5)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금융과 복지 부문의 가구원 자료를 통합하여 산출한 것이다.

6) 소득세 자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와 일용근로소득자의 합계로 구하되, 소득이 미미한 일용근로소득자를 제외하여 전체 취업 근로자수에 맞추었다.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

<그림 1> 통계청 근로소득 조사의 소득구간별 인원수 분포 (단위: 명)



자료: <표 1>

<그림 2> 통계청 근로소득 조사(2016년)의 과소 또는 과대 파악률 (소득세 자료=1)



자료: <표 1>

* <그림 2>에 따르면 조사별로 적지 않은 차이가 보이지만, 최상위 그룹은 물론이고 연소득이 6천만원 또는 8천만원을 넘으면 포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하위 소득 구간에서도 포착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중위 소득구간에서 상대적으로 포착률이 높아 역 U자형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소득 불평등도가 실제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잡히게 된다.
* 더구나 이러한 포착률의 양상은 연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따라서 이들 조사에서 파악된 소득의 수준이나 변화에는 포착률의 수준이나 변화가 반영되기 때문에 실태와 괴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 현재 통계청은 위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소득세 자료를 비롯한 행정자료에 의거하여 보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올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그림 2>에서 보인 소득세 자료와의 괴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 그러면 금융소득은 어떠할까? <표 2>에 따르면 두 가계조사의 파악률은 4% 또는14%에 불과하다. 과소 파악이 근로소득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자신도 잘 모르는 금융소득을 물으면 응답하지 못하고, 0으로 집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사업소득은 어떠할까? 앞의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과는 달리 소득세 자료로 사업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과세 제도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실제의 소득 산정과 차이가 있고, 탈루되는 소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소득의 경우 얼마나 정확한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표 2> 통계청 조사의 금융소득 및 근로소득의 파악률 (2016년)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 **현재 정부가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을까?**
* 통계청은 소득의 분포를 반영하는 “전용 표본”을 사용하여 괴리를 줄이고자 한다.
*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전술한 통계청 소득 조사의 문제는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피조사자의 과소 보고나 응답 거부를 막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경우는 피조사자가 자신의 소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응답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여기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한다고 해도 이 문제는 해소되기 어렵다.
* 그렇게 되면 결국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운 분기별 소득 조사 결과를 놓고 매 분기 발표 때마다 정치적 공방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 가계부 작성이나 면담조사 등을 통해서 “지난 달”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묻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인의 소득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 현재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면담 조사 결과를 놓고 다시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와 같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사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를 중단하고 소득 조사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심으로 이미 전환하였지만, 현 정부가 이를 뒤집는 바람에 혼란을 자초했다고 생각된다.
* 현재와 같이 거의 실시간으로 소득을 추적하듯이 “지난 달”(또는 “지난 분기”)의 소득을 조사하는 것은 응답의 사실 여부를 체크할 수가 없다. 행정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난 해”의 소득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예컨대 미국의 가계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에서도 “지난 해”의 소득을 조사하고 있으며, 응답할 때 자신의 소득세 신고를 참조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지난 해”의 소득을 조사할 때에도 현재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같이 단순히 지난해 소득이 얼마였냐고 묻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난 3개월간”의 평균소득을 묻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도 개편될 필요가 있다. 면담 조사 때 피조사자가 자신의 소득에 관한 다양한 행정정보(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조사 시기와 방법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의 가계동향조사의 부활에 쓰일 예산은 이러한 조사 방법을 개선하는데 투입되는 것이 통계청의 각 소득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더 기여할 것으로 본다.